

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예고

아래의 자치법규를 제정 및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년 3월 9일

양산시의회의장

1. 자치법규명

연 번	안 건 명	발의자
1	양산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	김석규 의원 대표발의
2	양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김석규 의원 대표발의
3	양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김석규 의원 대표발의
4	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김석규 의원 대표발의
5	양산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	김석규 의원 대표발의
6	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	김석규 의원 대표발의
7	양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김석규 의원 대표발의
8	양산시 신·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	이기준 의원
9	양산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정숙남 의원 대표발의
10	양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	공유신 의원 대표발의
11	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송은영 의원 대표발의
12	양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	공유신 의원 대표발의
13	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정성훈 의원 대표발의
14	양산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	이기준 의원
15	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정숙남 의원 대표발의

2. 개정이유 : 붙임 참고 바람

3. 주요내용 : 붙임 참고 바람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산시의회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)
- 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우편번호 : 50624

※ 주소 : 양산시 중앙로 39 (의회사무국)

※ 전화 : 392-8632, 팩스 : 392-8619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